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3호)

제 안 설 명



2022. 6.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 장 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302,676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의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
수는 1,09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며 대안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생 역시 이 권리에서 배제되
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이들을 '소수자 학생'으로 규정하여 그 특성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